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26 선고 2023나53358(본소), 2023나53365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하자보수청구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26 선고 2023나53358(본소), 2023나53365(반소) 판결
인천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1가단272987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현

담당변호사 박정은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

담당변호사 신재균

변론종결 2024. 3. 22.

판결선고 2024. 4. 26.

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가단272987(본소), 2021가단 272994(반소)

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(반소피고)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1,9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4.부터 2022. 4. 26.까지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-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22,5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, 당사자들의 주장,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2면 밑에서 2행 [인정근거] 중 “갑 제3호증”을 삭제한다.

○ 제4면 9행 “원고가”부터 11행 “증거가 없다.”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 “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67,500,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및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위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”

2.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상 하자로 ① 외벽 화강암 미시공, ② 누수(옥상, 지하 출입구, 3층), ③ 2, 3층 화장실 타일박리, ④ 현관 바닥 패임, ⑤ 지하계단 타일 박리를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건물에는 위 피고 주장의 하자 중 ‘외벽 화강암 미시공’, ‘누수(옥상, 지하 출입구, 3층)’, ‘2, 3층 화장실 타일박리’, ‘지하계단 타일 박리’의 하자가 존재하고,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총 21,950,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, ‘현관 바닥 패임’의 경우, 앞서 든 증거, 을 제1호증의 9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, 즉 ① 위 감정인이 ‘현관 바닥면 타일의 줄눈재가 패이거나 탈락된 점은 인정되나, 시공상 하자인지 생활하자인지 여부는 판단이 곤란하다’고 판단한 점(감정서 제126면), ②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것은 2019. 5. 30.경인 반면, 제1심 감정에 따른 현장방문이 이루어진 시점은 2022. 7. 21.경이어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, ③ 위 시공된 위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생활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‘현관 바닥 패임’이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시공상 하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1,9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. 11. 4.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

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. 4. 26.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그리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차승환, 판사 김한울, 판사 이지현